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1-72 |
|----------|-------|

제출년월일 : 2021.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법령에 근거 없이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의신청 규정 삭제(안 제20조제4항 ~ 제5항)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1. 5. 20. ~ 6. 9.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6) 제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의결(2021.6.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0조(심의절차) ① ~ ③ (생 략)</p> <p><u>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u></p> <p><u>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 <p>제20조(심의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삭 제></u></p> <p><u>⑤ <삭 제></u></p>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도시환경국 건축과 황철현 (☎ 3153-9443)